

『구미시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5년 6월 29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5년 7월 1일

라. 상정일자 : 2015년 7월 8일

제197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경제통상국장 황 중 철

나. 제안이유

- 「지방재정법」 개정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, 시가 권장하는 사업내용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

다. 주요내용

- 보조금지원 대상 사업 규정(안 제14조)
 - 숙련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한 각종 대회 및 행사 지원
 -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자에 대한 지원

- 준용 규정 신설(안 제17조)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 수정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숙련기술장려법」, 「지방재정법」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최 명 호

- 본 『구미시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은,
 - 숙련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, 시가 권장하는 사업내용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,
 - 「지방재정법」 개정에 따라, 해당사업의 지출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며, 기타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을 수정하고자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